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9
----------	-----

2012년 10월 9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8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10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 주요 위탁사무는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과 한글·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문화행사 등이며
- 위탁기간은 1년(2013. 1. 1 ~ 2013.12.31)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위탁사무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동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1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¹⁾에 의거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시장이 상기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2)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부당 문제를 해소하고 권익보호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서울생활을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립된 외국인지원시설로서, 동 센터는 2001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을 이래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4개 권역별로 총 7개의 센터가 설립·운영 중이며(별첨자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현황 등), 상기 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는 그동안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

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4. (생략)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과 소관 사항이었으나, 2012년 9월 28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로 편제되었음.

- 상기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내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무, 법률, 생활 상담 및 교육, 취업지원 등으로, 그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바, 시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겸비한 해당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참고로, 상기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타 민간위탁 사무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은 편임. 이와 관련하여,
 - 상기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단독건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비해 외국인근로자보다는 다문화가족 이용비율이 높은 편이며, 한편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등에 설치중인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개소)와 비교할 때 그 기능과 이용대상자가 유사 중복된다는 점에서 향후 종합사회복지관내 입주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하여 통·폐합 등의 정책적 검토를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간을 비교적 짧게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추후 외국인근로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역할 정립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통·폐합 등에 관한 합리적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노력이 요구되어짐.

〈별첨자료〉

□ 외국인근로자센터 현황: 총 7개소 ('12. 8월 현재)

센터명	위탁 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개설일자
			입주현황	전용면적	인력	
성동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성동구 홍익동	단독시설(구청소유)	452㎡	6	'01.12.14.
금천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금천구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내 (가산종합사회복지관)	65㎡	2	'07. 5. 1.
은평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은평구 녹번동	(녹번종합사회복지관)	37㎡	2	'08. 3.13.
강동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강동구 성내동	(성내종합사회복지관)	46㎡	2	'08. 3.15.
성북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3㎡	2	'09. 4.30.
양천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양천구 목동	(신목종합사회복지관)	70㎡	2	'09. 4.28.
서울	사단법인 세계선린회	영등포구 당산동	단독시설(쉽터, 임차)	494㎡	5	'10. 5.30.

□ 외국인근로자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 2010년 ○ 이용인원 : 5개 센터 총 66,652명

구분	총계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총계	66,652	11,116	21,072	9,727	10,576	14,161
한국어교실	20,922	7,283	4,773	2,985	2,339	3,542
컴퓨터교실	2,691	449	614	378	538	712
상담 지원	6,129	1,077	82	965	3,259	746
의료 지원	1,520	185	174	92	858	211
개별사업지원	35,390	2,122	15,429	5,307	3,582	8,950

• 2011년 ○ 이용인원 : 5개 센터 총 72,833명

구 분	총계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총 계	72,833	15,755	14,630	14,368	12,518	15,562
한국어교실	24,169	8,094	3,896	2,197	3,901	6,081
컴퓨터교실	2,251	397	801	211	339	503
상담 지원	8,745	1,931	573	1,929	3,263	1,049
의료 지원	1,121	241	120	100	507	153
개별사업지원	36,547	5,092	9,240	9,931	4,508	7,776

• 2012년 (6월말 현재) ○ 이용인원 : 5개 센터 총 24,058명

구 분	총계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총 계	24,058	6,713	2,754	3,583	3,091	7,917
한국어교실	11,366	4,990	1,299	1,710	963	2,404
컴퓨터교실	897	318	359	0	63	157
상담지원	2,217	718	321	303	423	452
의료지원	322	0	0	0	213	109
개별사업	9,256	687	775	1,570	1,429	4,79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9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1
- 시설규모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 시설 이용(70m²)
- 이용대상 :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2013. 1. 1. ~ 2013.12.31.)
- 위탁업무
 -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 소요예산 : 145,000천원(2013년)
- 수탁기관선정방법 : 재계약(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글로벌도시촉진조례 제6조, 제8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협약: 2009.4.28~2009.12.31(8개월,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 2차 재계약: 2010.1.1~2010.12.31(1년,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 3차 재계약: 2011.1.1~2012.12.31(2년,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라.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평화복지재단은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한 한국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 재계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제6조, 제8조, 제10조

- 제6조(외국인주민 생활 환경 개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제6조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할 때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 타

-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외국인생활지원과-7212, 2012. 8.13.)